

#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7P
----------	-----

제출년월일 : '95. 3.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정사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94.8.3 법률 제4773호) 및 동법 시행령 ('94.11.30 대통령령 제14419호)이 제정됨에 따라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등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구성인원 : 15인 이내
- 위원구성 : 부시장(위원장), 기획실장(부위원장), 관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위원회 기능 (안 제4조)

-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 3. 근거법령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4. 참고사항

#### ○ 내무부 조례준칙안(내무부 공기 13386-184 : '94.3.10) : 별첨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제도 주요내용 : 별첨

#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안산시 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市(郡)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準則(案)

條項	條文	備考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제2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이 (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기획감사실장)이 된다.</li> <li>○ 위원은 ○○시(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에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li> <li>○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li> </ul>	
제3조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li> </ul>	
제4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ol> </li> </ul>	

條項	條文	備考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li> <li>○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ul>	
제6조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이 (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li> <li>○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li> </ul>	
제7조 (간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li> <li>○ 간사는 ○○과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담당자)이 (가) 된다.</li> </ul>	
제8조 (의견청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li> </ul>	

條項	條文	備考
제9조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li> </ul>	
제10조 (수당 및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li> </ul>	
제11조 (운영 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社會間接資本 施設에 대한 民資誘致促進制度

-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민간투자 촉진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운영 도모
- 국가 경제 발전

## □ 民資誘致推進法

○ 제 정 일 ————— 법 ('94. 8. 3), 시행령 ('94. 11. 30)

○ 법적 성격

- 34개 사회간접자본 관련 법률에 대한 특별법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추진절차, 유인장치, 수익보장에 있어 34개 법률규정보다 우선 적용

도로법, 유로도로법, 철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특정다목적댐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어항법, 폐기물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관광진흥법, 주차장법, 도시공단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도서관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 민자유치 대상시설

- 제1종 시설 (공공성이 강한 시설, 준공과 동시 국가·자치단체에 귀속)

-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부속물
- 철도법에 의한	철도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특정다목적댐에 의한	다목적댐
- 수도법에 의한	수도등 12개 시설

- 제2종 시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인정)

-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전원 서비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시설
- 유통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등 18종

## ○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주체

- 순수 민간법인
- 민관 합동법인

※ 국가, 자치단체, 정부부자기관, 공사·공단은 출자는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될 수 없음

## ○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체계

-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위원: 내무부장관 등 15인)
  - 기본계획 심의, 사업계획심의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부대사업비 3천억원 이상 사업)

-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소규모사업 심의처리)
- 추진절차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정부)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주무관청)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주무관청 승인 ⇒ 공사 시행 ⇒ 준공검사 ⇒ 시설운영개시

※ 민간부문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 가능

## ○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장치

- 여타법률에 의한 인 · 허가의 동시 의제처리
  - 토지수용권의 발동 (주무관청이나 자치단체장에 위탁가능)
  - 국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가능 : 준공시까지, 준공후 사용료 징수
  -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세제 지원 : 개별법 적용
    - 농지, 산림의 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개발부담금 및 관련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에 반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40% 이상 출자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법 개정시 반영)
  - 차관도입 가능
  - 재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가능 : 수익성이 부족한 경우등 최소
  - 배당의 특례
    - 민관합동법인의 경우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에게 배당금 양보 가능
- ※ 민관합동법인의 경우 정부부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배제

## ○ 경영권 및 수익성 보장

- 경영권 보장
  - 제1종 시설 : 시행자에게 무상사용권 (관리 운영권) 부여
  - 제2종 시설 : 공공부분의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의결권 배제

- 수익성 보장 : 총 사업비 회수기간 동안 부상사용권 부여
- 사용료 결정의 자율화 : 신고제 원칙
- 수익성 부대사업의 허용 : 주택건설, 택지조성, 도심지 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 화물터미널 등 9종

※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부대시설 사업의 인·허가 제도가 의제처리됨